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248

발의연월일: 2022. 9. 5.

발 의 자:유경준·김 웅·박 진

서일준 · 신원식 · 윤창현

이명수 • 이채익 • 조명희

태영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제도를 두어 지방공사가 그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서울주택도시공사를 비롯한 지방공사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경영하는 주택사업 중 공공임대주택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됨에 따라 지방공사의 임대사업 손실이 가중되고 있음. 특히 서울주택도시공사의 2020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이 619억원이었던 반면, 2021년 납부액이 1,065억원으로 약 1.7배 증가하여 임대사업 손실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임대주택사업에 부과되는 지방세에 대한 감면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공사가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각각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여, 사업비용 절감과 안 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 5조의2 및 제177조의2).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부동산"을 "부동산[「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이 항에서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지방공사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 중 공공임대주택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 6. 지방공사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 중 공공임대주택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77조의2제1항제2호 중 "제85조의2제1항제4호"를 "제85조의2제1항제4호 수 제5호·제6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임대주택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85 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 제 감면) ① -----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 -----2025년 12월 31일--하다. 1. 지방공사가 그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그 사업 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 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 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 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 --부동산[「공공주택특별법」 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 우에는 그 율)에 대통령령으 임대주택(이하 이 항에서 "공 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 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제 비율(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 외한다]-----치단체 투자비율"이라 한다) 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2. ~ 4. (생 략) <u><신</u> 설>

<신 설>

②·③ (생 략)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저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 2. ~ 4. (현행과 같음)
- 5. 지방공사가 「지방공기업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 호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 중 공공임대주택으로 직접 사용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 다.
- 6. 지방공사가 「지방공기업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 호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 중 공공임대주택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 ②・③ (현행과 같음)

세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 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6 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 조제1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62조, 제63조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63조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

<u>.</u>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73조, 제74조제1항, 제76조제2	
항, 제77조제2항, 제82조, 제8	
4조제1항, <u>제85</u> 조의2제1항제4	
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제85조의2제
	1항제4호・제5호・제6호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